



제 4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 등〉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3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6. 18.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

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
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 등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의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위작·변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위작·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호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보전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현행	개정안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4의2. ~ 4의6.</u> (생략) 5. ~ 24. (생략) ④ (생략)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자</u> <u>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u>4의4. ~ 4의8.</u> (현행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¹⁾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생성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²⁾.
-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³⁾를 부과함.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3)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사진·영상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더라도 이후 이용자가 그 결과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제거하거나 인식이 어려울 만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닌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가 표시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표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 지원 및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훼손·위작·변작을 방지하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없이 단순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훼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 중 위작 및 변작은 행위자의 의도를 전제로 하나 훼손은 의도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는 훼손을 고의적인 훼손·위작·변작과 동일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안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지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표시 의무 주체와 표시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에서 이미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표시를 지원하더라도 그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 표시를 지원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안 제43조의2제2항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 사실 표시의 훼손·위작·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문언상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어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시스템의 유형 중 하나로 인공지능시스템에 포함되는 개념인바, 이를 고려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유통단계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표시의 훼손·위조·변조 금지의무를 도입하려는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용

- 유통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가 보존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AI 생성물 표시를 위·변작 및 훼손·제거한 자나 기술·관리적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을 수용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중검토

- AI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포괄적인 규제가 신설될 경우,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누구든지 표시의 훼손·위작·변작을 금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과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의안번호 제2204932호(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제2205512호(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제2210304호(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제2213740호(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제2216186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제2216369호(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2216849호(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제2217351호(박성훈의원 대표발의)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신중검토

-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주요 내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다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이 타당함.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신중검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의 훼손, 위·변작 방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 규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훼손·위작·변작의 의미와 표시 지

원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가 현재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로 확대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8